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14. 12. 5(금)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서울특별시의회  
교 육 위 원 회

#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예비심사보고서

2014년 12월 5일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4. 11. 10
- 회부일자 : 2014. 11. 11
- 상정일자 : 2014. 12. 01
- 의결일자 : 2014. 12. 05

(제257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수정 가결)

### 2. 예산안 주요내용

#### 가. 예산안 규모

-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6,900억 9천 1백만원으로,
- 2014년도 본예산(7조 4,391억 2천 9백만원) 대비 2,509억 6천 2백만원 (3.4%)이 증가하였음.

## 나. 세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본예산안		2014년 본예산		증 감(A-B)	
		예산액(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b>합 계</b>		<b>7,690,091</b>	<b>100%</b>	<b>7,439,129</b>	<b>100.0%</b>	<b>250,962</b>	<b>3.4%</b>
<b>이전수입 소계</b>		<b>6,891,264</b>	<b>89.6%</b>	<b>6,875,225</b>	<b>92.5%</b>	<b>16,039</b>	<b>0.2%</b>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 교 부 금	4,340,558	56.4%	4,534,407	61.0%	△193,849	△4.3%
자치 단체 이전 수입	<b>소 계</b>	<b>2,545,340</b>	<b>33.1%</b>	<b>2,334,708</b>	<b>31.4%</b>	<b>210,632</b>	<b>9.0%</b>
	법정전입금	2,541,163	33.0%	2,330,531	31.3%	210,632	9.0%
	비법정 전입금	4,177	0.1%	4,177	0.1%	0	0
기타이전 수 입	기타지원금	5,366	0.1%	6,110	0.1%	△744	△12.2%
<b>자체수입 소계</b>		<b>161,296</b>	<b>2.1%</b>	<b>223,062</b>	<b>3.0%</b>	<b>△61,766</b>	<b>△27.7%</b>
	교수학습활동수입	133,940	1.7%	145,000	1.9%	△11,060	△7.6%
	행정활동수입	5,052	0.1%	5,432	0.1%	△380	△7.0%
	자산수입	8,591	0.1%	40,464	0.5%	△31,873	△78.8%
	이자수입	4,376	0.1%	11,950	0.2%	△7,574	△63.4%
	금융자산회수	15	0	30	0.0%	△15	△50.0%
	기타수입	9,322	1.0%	20,186	0.3%	△10,864	△53.8%
<b>차 입</b>		<b>637,531</b>	<b>8.3%</b>	<b>90,842</b>	<b>1.2%</b>	<b>546,689</b>	<b>601.8%</b>
	지방교육채	637,531	8.3%	90,842	1.2%	546,689	601.8%
<b>기 타</b>		<b>0</b>	<b>0</b>	<b>250,000</b>	<b>3.3%</b>	<b>△250,000</b>	<b>순감</b>
	전년도이월금	0	0	250,000	3.3%	△250,000	순감

다. 세출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본예산(안)(A)		2014년 본예산(B)		비교증감 (A-B)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인 건 비	5,177,025	67.3%	4,808,096	64.6%	368,929	7.7%
기 관 운 영 비	35,935	0.5%	40,835	0.6%	△4,900	△12.0%
학 교 운 영 비	655,072	8.5%	658,216	8.9%	△3,144	△0.5%
교 육 사 업 비	1,295,057	16.8%	1,534,776	20.6%	△239,719	△15.6%
시 설 사 업 비	381,357	5.0%	267,414	3.6%	113,943	42.6%
지 방 채 및 BTL 상 환	137,742	1.8%	121,887	1.6%	15,855	13.0%
예 비 비	7,903	0.1%	7,905	0.1%	△2	-
합 계	7,690,091	100.0%	7,439,129	100.0%	250,962	3.4%

## 라. 주요사업 편성 내역

### ○ 교육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본예산(안) (A)	2014년 본예산(B)	비교증감 (A-B)	비 고
교 수 학 습 활 동 지 원	86,864	94,915	△8,051	○ 교육과정 개발, 독서교육 ○ 체육, 예술, 수련교육 등
과 학 . 외 국 어 . 정 보 화	53,432	59,949	△6,517	○ 과학.영재, 외국어, ICT활용교육 등
유 아 . 특 수 교 육	64,122	70,572	△6,450	○ 유아.특수교육
생 활 . 진 로 . 상 담 지 도	26,276	28,259	△1,983	○ 생활지도, 폭력예방, 진로진학 등
인 적 자 원 운 용	38,834	37,853	981	○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복지 등
보 건 . 급 식 . 체 육 활 동	291,803	271,346	20,457	○ 무상급식, 보건, 체육대회 등
평 생 . 직 업 교 육	27,987	33,445	△5,458	○ 평생.직업교육, 특성화고 지원
교 육 복 지 지 원	657,555	868,971	△211,416	○ 유치원 학비 (어린이집 보육료는 3개월분 편성) ○ 저소득층 지원, 초등돌봄교실 ○ 방과후학교, 혁신학교 등
교 육 활 동 지 원	48,184	69,466	△21,282	○ 교육행정정보화, 재무관리 ○ 학교시설 민간위탁 등
합 계	1,295,057	1,534,776	△239,719	

○ 시설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본예산(A)	2014년 본예산(B)	비교증감 (A-B)	비 고	
학 교 신증설	학교신설	208,714	102,240	106,474	○ 학교신설 추진 : 21개교 - 유5, 초5, 중6, 고4, 특1	
	교실증축	2,673	14,968	△12,295	○ 교실증축 : 23개교 - 유14, 초7, 중1, 특1	
	소 계	211,387	117,208	94,179		
시설 개선	일 반 시 설	학교시설 증 개 축	17,286	13,037	4,248	○ 강당겸체육관 증축 - 시설비 : 5교 - 설계비 : 18교 - 내부비품비 : 3교 ○ 기타 증축 - 특별교실 : 4교 - 화장실 : 2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 선	125,784	110,269	15,515	○ 노후교실 개축 : 3교 ○ 노후시설 개선(11개 사업)
		본 청 시설관리	179	115	64	○ 청사시설유지보수비 등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1,495	2,008	△513	○ 11개 교육지원청 시설유지보수
		직속기관 시설관리	2,917	3,110	△193	○ 직속기관 환경개선 846백만원 ○ 평생교육기관환경개선 2,071백만원
		소 계	147,661	128,539	19,122	
		급 식 시 설	조리기구 교 체	12,566	10,934	1,632
	급식시설 보 수		2,593	5,875	△3,282	○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 35건
	급식시설 신 증 축		7,150	4,858	△2,293	○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 6건
	소 계		22,309	21,667	642	
	계	169,970	150,206	19,764		
	합 계	381,357	267,414	113,943		

### 3. 제안설명 요지 (기획조정실장 김재금)

#### 가. 예산안 개요

- 전체 예산안 7조 6,901억원 중 인건비와 복지비 등을 포함한 경직성 경비는 전년보다 2,015억원 이상 증가한 6조 9,49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10% 미만에 불과함. 이에 따라, 재정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 재정비, 정책사업 폐지·축소, 기준경비를 20~30% 하향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절감예산을 편성하였음.
-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3.4% 증가한 7조 6,901억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2011년도 이후 매년 평균 약 4% 정도 증가한 규모이나, 내년도의 실질적인 예산규모는 교원명퇴수당, 교육환경개선, 학교신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6,375억원을 제외하면 7조 526억 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오히려 5.2%인 3,865억원 감소한 규모임.

#### 나. 세입예산안에 대한 자원별 내역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으로 금년보다 1,938억원 감소한 4조 3,406억원이고, 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및 시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으로 2,106억원이 증가한 2조 5,453억원이며, 기타이전수입은 54억원임.
- 자체수입은 총 1,613억원으로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수입 1,339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의 행정활동수입 51억원, 토

지 및 건물 매각, 임대료 수입 등 자산수입 86억원, 이자수입 44억원, 금융자산회수 및 기타수입은 보증금 회수, 변상금, 그 외 수입 등 93억원임.

## 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 세출예산은 인건비 5조 1,770억원, 기관운영비 359억원, 학교운영비 6,551억원, 교육사업비 1조 2,951억원, 시설사업비 3,814억원, 지방채 및 BTL상환 1,377억원, 예비비 79억원임.
- 인건비는 총 8만 4,500여명 교직원의 보수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보다 3,689억원이 늘어난 5조 1,770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인건비 증감내역은 기본급 3.8% 인상과 호봉승급분 1.7%를 반영하고, 지방채로 충당하는 교원 명예퇴직 예산 2,562억원을 포함한 규모이며, 맞춤형복지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에서 613억원을 절감 편성하였음.
- 기관운영비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41개 교육행정기관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업무추진비, 여비 등 10개 기준경비를 전년대비 20~30% 줄여 49억원 절감 반영하여 총 359억원을 편성하였음.
- 학교운영비는 전년대비 31억원이 감소한 6,551억원으로 기본운영비를 전년대비 8%인 427억원 절감 편성하였으나, 신설학교 운영비, 학교직원인건비 증가분, 중학교 학습준비물비, 학교평등예산제 등 필수경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음.
- 교육사업비는 금년 1조 5,348억원보다 2,397억원이 감소한 1조 2,951억원을 반영하였음. 경상적인 사업 축소 및 폐지로 532건 1,17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중 9개월

분인 2,743억원을 편성하지 못하였음.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을 포함하면 실제 교육사업비는 1조 5,694억원으로 2.3% 증가한 규모임.

- 전체 교육사업비 1조 2,951억원의 69%에 해당하는 8,970억원의 예산이 누리과정, 무상급식, 저소득지원, 교육복지특별지원 등 대표적인 6개 분야 복지사업에 투입되고 있음.
- 시설비는 금년도 2,674억원에서 1,139억원이 증가한 3,814억원의 총금액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충당할 예정임. 세입 감소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 등 재정여건으로 시설사업비를 편성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학교신설, 교실증축, 노후시설 보수 예산 등은 학생들의 안전과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 학교신증설 예산은 2014년 대비 942억 원 증가한 2,114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신설 21개교, 교실증축 23개교를 추진할 계획이고, 체육관 등 학교시설 증개축에 173억원을 반영하였음.
- 지방채 및 BTL상환은 올해보다 159억원이 증가한 총 1,377억원을 편성, 지방채 이자상환에 267억원, 민간자본으로 투자된 141개교에 대한 BTL 상환에 1,109억원을 반영하였음.

##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연주)

### 가. 세입예산

-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조 6,900억 9천 1백만원으로, 2014년 대비 2,509억 6천 2백만원(3.4%)이 증가하였지만 국가 주요정책사업 추진 및 교육복지사업의 지속적 확대 등의 재정수요 증가로 실질적인 세출압박은 더욱 가중된 상황임.
- 이전수입은 6조 8,912억 6천 4백만원으로 2014년 대비 160억 3천 9백만원 증가(0.2%)하였는 바, 이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938억 4천 9백만원 감소(△4.3%)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전년대비 2,106억 3천 2백만원 증가(9.0%)하였기 때문임.
- 2015년도 총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자치단체이전수입 등이 전체세입의 89.6%를 차지하고 있어 2014년도 92.4%인 6조 8,752억 2천 5백만원 보다<sup>1)</sup> 감소하는 추세라 하더라도 자체수입이 전체세입의 2.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재원의 의존도는 교육청의 재원구조상 여전히 심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 이전수입 : 6조 8,912억 6천 4백만원(전년대비 160억 3천 9백만원)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4조 3,405억 5천 8백만원으로 2014년 대비 1,938억 4천 9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자치단체이전수입은 2조 5,453억 4천만원으로 2014년 대비 2,106억 3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53억 6천 6백만원으로 2014년 대비 7억 4천 4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1) 이전수입 비율은 2012년도 97.5%, 2013년도 93.8%였음.

## 2015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단위 : 천원)

구분	측정항목	교부액	
기준재정 수요액 (A)	1. 교직원인건비	교원	4,358,528,710
		교육전문직원	43,814,704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503,251,261
		공무원 및 사무직원외의 직원	151,870,617
		<b>교원 명예퇴직</b>	-
		소 계	5,057,465,292
	2. 학교교육과정운영비	가. 학교경비	604,785,038
		나. 학급경비	145,708,785
		다. 학생경비	220,575,200
		라. 교육과정운영비	55,797,445
		마. 교과교실운영비	7,120,000
		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운영비	2,480,000
		<b>사. 기숙형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b>	-
		<b>아. 통폐합학교의 기숙사 운영비</b>	-
		자. 학교상담실운영비	1,348,000
		소 계	1,037,814,468
	3. 교육행정비	가. 기관운영비	105,778,381
		나. 지방선거경비	-
		소 계	105,778,381
	4. 교육복지지원비	가. 지역간균형교육비	1,367,086
		나. 계층간균형교육비	83,672,569
		소 계	85,039,655
	5. 학교시설비	<b>가. 교육환경개선비</b>	-
		<b>나.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b>	-
		<b>다. 교과교실시설비</b>	-
		<b>라. 학교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증설비</b>	-
		<b>마. 군단위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이전·개축비</b>	-
		<b>바. 사립학교 이전 건축비 부족분 지원</b>	-
		<b>사. 기숙사시설비</b>	-
		<b>아. 초등돌봄교실 시설비</b>	-
		소 계	-
	6. 유아교육비	가.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588,497,744
		나. 유치원교원 인건비 보조	32,633,640
		다.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15,526,121
		<b>라. 공립유치원 신설·증설비</b>	-
		소 계	636,657,505
	7. 방과후학교사업비	가.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23,122,423
		나. 자유수강원지원	-
		다. 초등돌봄교실지원	30,510,150
		소 계	53,632,573
	8. 재경결함보전	가. 지방교육채상환	16,473,958
		나. 민자사업지급금	33,443,000
		소 계	49,916,958
	9. 학교·학급 통폐합지원		25,220,000
	10.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297,000

	1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25,000,000	
	12.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유치	1,964,206	
	13.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비율	2,638,372	
	<b>14.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지원</b>	-	
	<b>합 계</b>	<b>7,081,424,410</b>	
<b>기준재정 수입액 (B)</b>	1. 지방세 등 법정전입금	지방교육세	1,186,335,104
		시도세	967,511,568
		담배소비세	210,177,488
		소 계	2,364,024,160
	2. 수업료 및 입학금 수입	340,911,028	
	<b>3.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b>	-	
	4. 지방소비세 확대분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88,818,284	
	<b>합 계</b>	<b>2,793,753,472</b>	
<b>감사결과 반영(C)</b>		-	
<b>보통교부금 교부액=A-B+C</b>		<b>4,287,670,938</b>	

- 2015년도 중앙정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은 교원명예퇴직 인건비, 학교시설비,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등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반영되지 않았음. 현재 누리과정의 재원분담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반영하면서도 시설사업비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일체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보통교부금 산정의 편중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년대비 1,938억 4천 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게 되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교육청 총 세입규모의 56.4%를 차지하는 중요재원으로 시설사업비 등의 필수재원을 보통교부금 산정시 반영하지 않으면서 이를 지방교육채로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자체수입 규모가 미비한 교육청의 재원구조에서 향후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하겠음. 따라서 이러한 보통교부금 산정방식이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중앙정부에 불합리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야 할 것임.

- 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1조 2,240억 9천만원, 담배소비세전입금 2,179억 9천 6백만원, 시도세전입금 9,857억 1천만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45억 4천 9백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888억 1천 8백만원 및 비법정전입금 41억 7천 7백만원 등 전년대비 2,106억 3천 2백만원이 증가한 2조 5,453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본예산(A)	2014년 본예산(B)	비교증감 (A-B)	비 고	
중앙정부 이전수입	보통교부금	4,340,558	4,534,407	△193,849	○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반영	
자치단체 이전수입	법정	지방교육세	1,224,090	1,128,479	95,611	○ 지방교육세의 100%
		담배소비세	217,996	247,466	△29,470	○ 담배소비세의 45%
		시 세	985,710	936,801	48,909	○ 시도세의 10%
		학교용지부담금	24,549	17,785	6,764	○ 학교용지 소요액의 50% (가재울초, 송신초, 장원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88,818	0	88,818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소 계	2,541,163	2,330,531	210,632	
	비법정	광역자치단체	4,177	4,177	0	○ 공공도서관 운영비
계		2,545,340	2,334,708	210,632		
기타이전수입		5,366	6,110	△744	○ 대학수학능력시험 4,156백만원 ○ 교육금고 협력사업 1,210백만원	
합 계		6,891,264	6,875,225	16,039		

- 이전수입 총규모가 비록 전년대비 160억 3천 9백만원 증가하였지만, 세입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재정의 현실에서 국가정책사업을 포함한 교육복지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경향에 따른 의무지출성 경비의 증가로 말미암아 가용재원의 실질적 경직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정부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 등으로 2015년 국내경제가 4.0%의 성장률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중국의 경기 둔화·성장전략 전환, 세계교역량 증가세 둔화 등을 제약 요인으로 보고 있음.<sup>2)</sup> 그러나 현재 세수결손의 지속 및 빠른 지출 증가추세가 중기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내년도 경기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고 자칫 경제성장률의 정체 내지 둔화 현상이 지방세의 세수부진으로 이어진다면 세입감소로 인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므로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비책을 고안하여야 할 것인 바,
- 교육청의 「2015~2019중기재정운용계획」이 연평균 3.9%의 세입증가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입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특히 최근 누리과정 지원이 지방교육의 재정수요로 추가되었음에도 오히려 중앙정부이전 수입은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재정 전망은 매우 유동적 상황이라 하겠음.
-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복지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의 내국세 비율(현행 20.27%)을 유지하게 된다면 결국 교육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저해시켜 재정운용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바,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건전한 재정운용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반 법령의 개정을 적극 건의하여야 함은 물론 그 밖에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sup>3)</sup>

2)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국내경제가 2014년(3.6%)보다 0.2%p 높아진 3.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이러한 전망치는 정부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전제한 경제성장률(4.0%)보다 0.2%p 낮은 수준으로,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음.

3) 지방교육 지출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① 교부금의 내국세율 교부율을 인상하자는 의견(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0.77~25%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4건(박홍근 의원안(2012. 11. 19), 김상희 의원안(2013. 2. 13), 김태년 의원안(2013. 6. 4), 백재현 의원안(2014. 1. 28))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 ② 교부금 내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특별교부금 대신 일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높여야 한다

■ 자체수입 : 1,612억 9천 6백만원(전년대비 △617억 6천 6백만원)

- 자체수입은 1,612억 9천 6백만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110억 6천만원, 행정활동수입 3억 8천만원, 자산수입 318억 7천 3백만원, 이자수입 75억 7천 4백만원, 금융자산회수 1천 5백만원 및 기타수입 108억 6천 4백만원이 감소하여 2014년 대비 617억 6천 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경기침체와 맞물려 은행의 금리하락, 이월금(순세계잉여금) 감소 및 유휴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감액 편성되고 있는 추세이나,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입의 증대는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교육청은 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조기 확보, 자체수입금의 적기 징수, 자금 통합관리 강화 등의 자금운용방법을 개선하여 자금의 수요예측을 장기적으로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이율이 높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장기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본예산(A)	2014년 본예산(B)	비교증감 (A-B)	비 고
교 수 학 습 활 동 수 입	133,940	145,000	△11,060	○ 고교입학금 및 수업료(07년 이후 동결)
행 정 활 동 수 입	5,052	5,432	△380	○ 사용료수입(토지, 시설물, 입장료) ○ 수수료수입(고입전형료, 검정수수료 등)
자 산 수 입	8,591	40,464	△31,873	○ 노이초 토지매각 등
이 자 수 입	4,376	11,950	△7,574	○ 금리인하로 감소
금 융 자 산 회 수	15	30	△15	○ 임대차계약 및 기타보증금 회수액
기 타 수 입	9,322	20,186	△10,864	○ 변상금 등 : 908백만원 ○ 기타수입(그외수입) : 8,414백만원
합 계	161,296	223,062	△61,766	

는 의견(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금 교부비율을 현행 4%에서 2~3%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6건(정진후 의원안(2012. 11. 5), 유성엽 의원안(2012. 11. 6), 박홍근 의원안(2012. 11. 12), 김윤덕 의원안(2012. 12. 26), 김상희 의원안(2013. 2. 13), 정부안(2014. 4. 29))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 ③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시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는 의견(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의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시기 또는 규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2건(정진후의원안(2014. 5. 14), 유은혜의원안(2014.6.12.))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 등의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 지방교육채 및 전년도이월금 : 6,375억 3천 1백만원  
(전년대비 ▲2,966억 8천 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안(A)	2014년 본예산(B)	증감 (A-B)	
			금액	%
지방교육채	637,531	90,842	546,689	601.8%
전년도 이월금	0	250,000	△250,000	△100%
계	637,531	340,842	296,689	87.0%

-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을 당해연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임(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2014년도 결산은 2015년 6월말에 확정되므로, 본예산에서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나머지 대부분을 세입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할 것임. 최근 3년간의 순세계잉여금 평균이 약 3,000억원 정도였으나 이번 예산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편성되지 않았음.

**<2010~2014 순세계잉여금 반영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본예산액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액	직전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총규모
<b>2010</b>	6,315,817,715	30,571,799	370,898,818
<b>2011</b>	6,616,502,054	300,000,000	310,010,078
<b>2012</b>	7,116,287,160	49,864,032	223,621,992
<b>2013</b>	7,368,893,000	150,000,000	304,383,791
<b>2014</b>	7,439,129,000	250,000,000	88,493,872
<b>평 균</b>		<b>156,087,166</b>	<b>302,228,670</b>

-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의 미편성은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교육복지사업의 확대 등으로 세출 요인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이전수입 등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며, 이는 2014년도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편성에 따른 사업 규모 축소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지방교육채는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수요와 교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인하여 6,375억 3천 1백만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현재 교육청의 재정수입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음.
- 특히, 학교신설 등의 학교시설비와 교원 명예퇴직 인건비는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측정항목임에도 교육부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지방교육채로 발행하여 재원의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전체 세입재원의 56.4%를 구성하고 있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비중의 축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임.

- 지방교육채 상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청 자체부담금을 제외하면 교육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 상환하지만 이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교육청이 집행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 액수가 줄어들게 되어 지방교육채를 또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고, 보통교부금 산정이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정책사업과 맞물려 교부되고 있어 다양한 교육사업 내지는 시설사업 투자를 위한 예산의 확보가 곤란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임.
- 따라서 국가부담 지방교육채라 하더라도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세입구조상 매년 반복적인 지방교육채의 발행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전체적인 채무의 증가로 귀결되어 결국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됨. 더욱이 지방교육채 제도의 본래 목적과 달리 현재와 같이 재원보전기능에만 급급하다면 향후 지방교육채 제도의 운용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나. 세출예산

- 세출예산 총 규모는 7조 6,900억 9천 1백만원으로 인건비 5조 1,770억 2천 5백만원, 운영비 6,910억 7백만원, 사업비 1조 6,764억 1천 4백만원, 지방채 및 BTL상환 1,377억 4천 2백만원과 예비비 79억 3백만원으로 편성되어있음.
- 전체 세출예산안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각각 67.3%와 9.0%로 전년대비 2.2%가 증가되었는데, 교육청 세출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여전히 경직성 경비가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사업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21.8%로 전년대비 2.4% 감소하였는 바, 시설 사업비는 전년대비 1,139억 4천 3백만원 증가한 3,813억 5천 7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에도 교육사업비가 전년대비 2,397억 1천 9백만원(△15.6%) 감소한 1조 2,950억 5천 7백만원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1,257억 7천 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2010~2015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 증감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전체예산	시설사업비(A)	교육사업비(B)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A/B)
2010	6,315,818	683,577	661,758	103.3%
2011	6,616,502	494,586	899,303	55.0%
2012	7,116,287	542,721	1,159,883	46.8%
2013	7,368,893	335,618	1,174,157	28.6%
2014	7,439,129	267,414	1,534,776	17.4%
2015	7,690,091	381,357	1,295,057	29.4%

-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 규모는 3년간 약 25%로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의 교육복지사업의 확대에 인하여 시설사업비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최근의 예산편성 흐름이 하드웨어적 시설투자보다 소프트웨어적 교육프로그램 투자를 중시하는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재정의 투자구조가 전환된 것이라 하더라도 학교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의 교육여건과 직결된 사업들이 몇 년째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적기에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시설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이라는 면에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겠음. 더욱이 이러한 사업을 지방교육채의 발행을 통해서 충

당하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비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특정영역에 편중되지 않는 적절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1~2015 재원배분 현황(경직성경비와 비경직성경비 대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항목	2011년 본예산	2012년 본예산	2013년 본예산	2014 본예산	2015 본예산(안)
경 직 성 경 비	인 건 비	4,425,885	4,626,691	4,769,470	4,808,096	5,177,025
	기 관 운 영 비	39,215	40,034	40,882	40,835	35,935
	학 교 운 영 비	528,174	583,634	647,935	658,216	655,072
	지 방 채 및 BTL	192,493	137,442	152,450	121,887	137,742
	예 비 비 및 기타	36,846	25,882	248,381	7,905	7,903
소 계		<b>5,222,613</b>	<b>5,413,683</b>	<b>5,859,118</b>	<b>5,636,939</b>	<b>6,013,677</b>
		<b>78.9%</b>	<b>76.0%</b>	<b>79.5%</b>	<b>75.8%</b>	<b>78.2%</b>
비 경 직 성 경 비	교 육 사 업 비	899,303	1,159,883	1,174,157	1,534,776	1,295,057
	시 설 사 업 비	494,586	542,721	335,618	267,414	381,357
소 계		<b>1,393,889</b>	<b>1,702,604</b>	<b>1,509,775</b>	<b>1,802,190</b>	<b>1,676,414</b>
		<b>21.1%</b>	<b>24.0%</b>	<b>20.5%</b>	<b>24.2%</b>	<b>21.8%</b>
합 계		<b>6,616,502</b>	<b>7,116,287</b>	<b>7,368,893</b>	<b>7,439,129</b>	<b>7,690,091</b>

※ 2013년 누리과정 2,320억원은 예비비에 포함됨.

-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은 최근 5년간 전체 세출예산의 약 77.7%로 세출예산의 22.3%만이 사업비로 편성됨. 그러나 사업비 중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비의 증가로 인하여 다른 사업들이 잠식되고 있는 등 현재 교육청의 사업비 구조는 신규사업을 억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간 재조정을 통하여 사업을 폐지, 축소, 통합하여야 하는 상황임. 예산의 계획성에 비추어 불요불급한 사업

간의 재조정은 합리적 조치로 사료되지만, 자금압박으로 인한 부득이한 재구조화는 자칫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사업간의 자원배분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다. 편성내역별 검토

### ■ 인건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본예산(안) (A)	2014년 본예산(B)	비교증감 (A-B)	비 고	
공 립	교 인 건 비	보수	2,793,334	2,728,936	64,398	○ 기본급 3.8%인상 호봉승급분 1.7%인상
		법정부담금등	734,614	539,869	194,745	○ 법정부담금 인상
		소 계	3,527,948	3,268,805	259,143	
	교육전문직 인 건 비	보수	35,667	35,203	464	○ 기본급 3.8%인상 호봉승급분 1.7%인상
		법정부담금등	9,154	7,752	1,402	○ 법정부담금 인상
		소 계	44,821	42,955	1,866	
	지방공무원 인 건 비	보수	335,699	325,948	9,751	○ 기본급 3.8%인상 호봉승급분 1.7%인상
		법정부담금등	90,139	77,519	12,620	○ 법정부담금 인상
		소 계	425,838	403,467	28,371	
	정규직 인건비		3,998,607	3,715,227	283,380	
	계약제교원 인 건 비	보수	154,451	160,818	△6,367	○ 기본급 3.8%인상
		법정부담금등	27,106	25,624	1,482	○ 법정부담금 인상
		소 계	181,557	186,442	△4,885	
	계약제직원 인 건 비	보수	1,824	2,493	△669	○ 기본급 3.8%인상
		법정부담금등	1,234	3,807	△2,573	○ 법정부담금 인상
		장애인고용 의무제운영	4,242	3,660	582	○ 법정의무고용률 상향 ○ 고용장려금 인상
		소 계	7,300	9,960	△2,660	
	계약직 인건비		188,857	196,402	△7,545	
	계		4,187,464	3,911,629	275,835	
사 립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989,562	896,467	93,095		
합 계		5,177,026	4,808,096	368,930		

- 인건비는 총 세출예산안의 67.3%(5조 1,770억 2천 6백만원4)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5) 인건비 편성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교직원인건비 측정항목 중 교원명예퇴직을 0원으로 하여 예정교부 할 계획임에 따라 2015년도 예산안의 교원명예퇴직 수당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세출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음.
-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금의 감소와 인건비 및 복지비용 증가로 재정 결손이 심각한 상황으로,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 등의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더라도 경직성 경비와 무상급식, 누리과정 보육료 등 복지예산 증가로 인하여 세출재원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인바, 부득이 교원명예퇴직 수당을 지방교육채로 발행하여 부족한 세출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 하겠음.
-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이 지방교육채 발행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6)에서 구체적 대상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명예퇴직 수당이 지방교육채 발행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7)

4) 2015년도 보통교부금 교직원인건비 기준재정수요액은 5조 574억 6천 5백만원임.

5) 2013년부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8조에 따라 ‘과’ 단위 기구는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5조에 따라 교육감이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함.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의 지방채 발행대상은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음.

7) 지난 10월 27일, 교육청은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족한 교원명예퇴직 수당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급증하는 명예퇴직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중앙부서(교육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하였음.

- 다만, 현행 법령이 지방교육채 발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취지가 교육청의 채무최소화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교육채의 발행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외적으로 현재와 같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대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나 인력 구조조정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예산 절감과 재정건전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지방교육채의 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현재 지방교육채 발행대상의 확대 및 명확화를 위한 법령의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바, 교육청은 이러한 점에 주의하여 지방교육채의 발행을 최소화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sup>8)</sup>

### 2010~2014 교원 명예퇴직 수당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본예산	추경	추가재배정 (재정결함지원)	예산계	집행액	명예퇴직 인원	
2010	공립	15,540	30,660	0	46,200	45,879	570
	사립	5,460	12,200	0	17,660	17,025	225
	계	<b>21,000</b>	<b>42,860</b>	<b>0</b>	<b>63,860</b>	<b>62,904</b>	<b>795</b>
2011	공립	28,080	0	28,311	56,391	51,170	642
	사립	7,878	0	7,345	15,223	15,223	211
	계	<b>35,958</b>	<b>0</b>	<b>35,656</b>	<b>71,614</b>	<b>66,393</b>	<b>853</b>
2012	공립	28,080	34,459	18,980	81,519	81,519	928
	사립	7,878	10,904	4,776	23,558	23,557	295
	계	<b>35,958</b>	<b>45,363</b>	<b>23,756</b>	<b>105,077</b>	<b>105,076</b>	<b>1,223</b>
2013	공립	81,576	0	0	81,576	81,463	922
	사립	27,016	0	0	27,016	24,559	315
	계	<b>108,592</b>	<b>0</b>	<b>0</b>	<b>108,592</b>	<b>106,022</b>	<b>1,237</b>
2014	공립	23,687	0	0	23,687	23,687	417
	사립	6,624	0	0	6,624	6,624	137
	계	<b>30,311</b>	<b>0</b>	<b>0</b>	<b>30,311</b>	<b>30,311</b>	<b>554</b>

8) 현재 국회 김장실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2011~2015년도 공립 인건비 편성·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A)	지출액 (B)	불용액 (C=A-B)	불용율	비고
2011년	정규직 인건비	교육공무원급여	3,081,689	3,042,288	39,401	1.28%	
		지방공무원급여	348,210	341,039	7,171	2.06%	
	비정규직 인건비	계약제교원급여	114,344	110,820	3,524	3.08%	
		지방공무원 대체인력급여	1,711	1,143	568	33.20%	
	<b>합계</b>		<b>3,545,954</b>	<b>3,495,290</b>	<b>50,664</b>	<b>1.43%</b>	
2012년	정규직 인건비	교육공무원급여	3,252,865	3,197,150	55,715	1.71%	
		지방공무원급여	372,297	365,043	7,254	1.95%	
	비정규직 인건비	계약제교원급여	135,614	132,753	2,861	2.11%	
		지방공무원 대체인력급여	1,814	1,166	648	35.72%	
	<b>합계</b>		<b>3,762,590</b>	<b>3,696,112</b>	<b>66,478</b>	<b>1.77%</b>	
2013년	정규직 인건비	교원인건비	3,248,910	3,241,311	7,599	0.23%	
		전문직인건비	41,263	41,089	174	0.42%	
		지방공무원인건비	392,534	390,024	2,510	0.64%	
	비정규직 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192,333	158,350	33,983	17.67%	
		계약제직원인건비	8,748	6,550	2,198	25.13%	
	<b>합계</b>		<b>3,883,788</b>	<b>3,837,324</b>	<b>46,464</b>	<b>1.20%</b>	
2014년 (추정)	정규직 인건비	교원인건비	3,256,375	3,255,316	1,059	0.03%	
		교육전문직원인건비	42,932	42,584	348	0.81%	
		지방공무원인건비	403,114	403,049	65	0.02%	
	비정규직 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178,047	170,405	7,642	4.29%	
		계약제직원인건비	8,381	7,390	991	11.82%	
	<b>합계</b>		<b>3,888,849</b>	<b>3,878,744</b>	<b>10,105</b>	<b>0.26%</b>	
2015년	정규직 인건비	교원인건비	3,527,949				
		교육전문직원인건비	44,820				
		지방공무원인건비	425,838				
	비정규직 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181,557				
		계약제직원인건비	7,300				
	<b>합계</b>		<b>4,187,464</b>				

※ 2014년 인건비 집행액은 2014.10.31 기준의 추정액임

- 공무원 아닌 근로자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당초 교육부장관이 산출한 기준인원의 공무원 아닌 근로자 중 교육부가 선정한 시·도교육청 공통직종(13개)에 대하여만 보통교부금 측정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현행 13개 직종 외에 기타직종을 포함하여 전체 직종 기준인원을 총액인건비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하였음. 현재 학교회계직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인건비 비중의 과도한 상승은 지방교육재정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총액인건비의 범위에서 기준인원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15년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총액인건비 산정인원 산정식**

분야	직종	대상		산식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교무	교무 보조	유(단설), 초, 중, 고, 특수	유(단설), 초, 중, 고, 특수	학교당 1명 배치, 학생수 600명 이상일 경우 1명 추가 배치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에 1명 배치(특수 학급 제외)	학교당 1명 산정 학생수 800명 이상일 경우 1명 추가 산정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에 1명 산정(특수 학급 제외)
	과학 보조	초, 중, 고	초, 중, 고	학생수 7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배치	학생수 7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산정
	전산 보조	고	고	학생수 1,0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배치	학생수 1,0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산정
	사서 (보조)	초, 중, 특수	초, 중, 특수	도서관(실) 설치학교를 기준으로 사서 교사(정규직원) 미배치교에 1명 배치, ※ 학생수 100명 이하 학교(초), 600명 이하 학교(중, 고등학교 제외)	도서관(실) 설치학교를 기준으로 사서 교사(정규직원) 미배치교에 1명 산정, ※ 학생수 300명 이하 학교(초), 600명 이하 학교(중, 고등학교 제외)
행정	사무 보조	초, 중, 고	초	학생수 6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배치	학생수 65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산정
	학부모회 직원	중, 고	중, 고	학생수 2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배치	학생수 2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산정
학생	특수교육 보조	유(단설), 초, 중, 고, 특수	유(단설), 초, 중, 고, 특수	1급 장애학생 20명당 1명 배치(전체규모) 특수학급 2학급당 1명 배치(전체규모)	1급 장애학생 20명당 1명 산정(전체규모) 특수학급 2학급당 1명 산정(전체규모)
급식	영양사	유(단설), 초, 중, 고, 특수	유(단설), 초, 중, 고, 특수	단독조리교수를 기준으로 영양사(정규직원) 미배치교에 1명 배치, ※ 학생수 40명 이하의 학교 제외	단독조리교수를 기준으로 영양사(정규직원) 미배치교에 1명 산정, ※ 학생수 40명 이하의 학교 제외
	조리사	유(단설), 초, 중, 고, 특수	유(단설), 초, 중, 고, 특수	단독조리교수를 기준으로 조리사(정규직원) 미배치교에 1명 배치	단독조리교수를 기준으로 조리사(정규직원) 미배치교에 1명 산정
	조리원	유(단설), 초, 중, 고, 특수	유(단설), 초, 중, 고, 특수	단독조리교수를 기준으로 조리원(정규직원) 미배치교에 학생수 99명 이하(공동조리교포함)는 1명 배치, 100~149명은 2명, 150~299명은 3명, 300~449명은 4명, 450~649명은 5명, 650명 이상은 280명당 1명 추가, 1210명 이상은 300명당 1명 배치하되, 1810명 이후는 10명으로 배치	단독조리교수를 기준으로 조리원(정규직원) 미배치교에 학생수 99명 이하(공동조리교포함)는 1명 산정, 100~149명은 2명, 150~299명은 3명, 300~449명은 4명, 450~649명은 5명, 650명 이상은 280명당 1명 추가, 1210명 이상은 300명당 1명 산정하되, 1810명 이후는 10명으로 산정
	배식 보조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비조리학교 중 3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배치	비조리학교 중 1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산정
복지	전문 상담사	초, 중, 고	초, 중, 고	초등학교당 0.4명/중·고등학교당 0.45명 배치(전체규모) Wee센터 설치 개수당 5명 배치	초·중·고등학교당 0.2명 산정(전체규모) Wee센터 설치 개수당 3명 산정
	돌봄 전담사	초	초	학생수 20명당 1명 배치	돌봄교실 학급당(학생수 20명 기준) 1명 산정
기타	기타		초, 중, 고		학생수 8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산정

※ 국립학교,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학교), 사립유치원, 분교장 제외

-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17조 및 제43조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인건비 및 운영비재정결함지원)을 받고 있음.
- 인건비와 관련하여 2015년도 10월 기준,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을 받는 291개교 중 법인의 재정자립도가 100%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 법인전입금 납부비율이 0%인 사립학교가 존재하는 바, 법정부담금과 재정결함보조금을 연계하여 수익이 있음에도 법정부담금 납부액을 전출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액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에 대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하는 등 사립학교 재정지원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임.

## ■ 운영비

### □ 기관운영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수	2015년 본예산(안) (A)	2014년 본예산(B)	비교증감 (A-B)	비 고
본 청	1	4,737	5,685	△948	
교육지원청	11	7,300	8,577	△1,277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21	12,307	13,541	△1,234	
사 업 소	8	11,591	13,032	△1,443	
합 계	41	35,935	40,835	△4,900	○ 예산절감 편성

## □ 학교운영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본예산(A)	2014년 본예산(B)	비교증감 (A-B)	비 고
학교운영비	592,603	597,962	△5,359	○ 대상 : 1,151교 (유 194원, 초 556교, 중 273교, 고 115교, 특수 7교, 각종 6교)
운 영 비 재정결함지원	62,469	60,254	2,215	○ 대상 : 사립 127교 (중 108교, 특수학교 19교)
합 계	655,072	658,216	△3,144	

- 학교운영비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 교육활동 지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 등으로 구성되며 적정교육비 연구용역 결과<sup>9)</sup>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1억 4천 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학교운영비는 일선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비로써 학교별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 비용이나 시설 관리·유지비, 냉·난방비, 교육기자재 구입비, 도서관 운영비, 각종 행사비, 정보화용품비, 교직원 연수비, 급식실·화장실 보수비 등이 이에 해당됨. 학교운영비는 교육환경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비용이지만, 누리과정 등의 교육복지사업의 확대에 의한 세출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최소비용만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더욱이 그동안 학교가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학교운영비에 교원연구비와 같이 용도가 지정된 목적사업비가 포함되면서 학교운영비가 더욱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바, 결국 학교운영비 감소에 따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9) 각급학교 적정교육비 배분기준 개선방안 연구(2013.11)

## ■ 2015년도 예산안 주요 쟁점사항

### □ 비법정전입금(조례상 전입금) 미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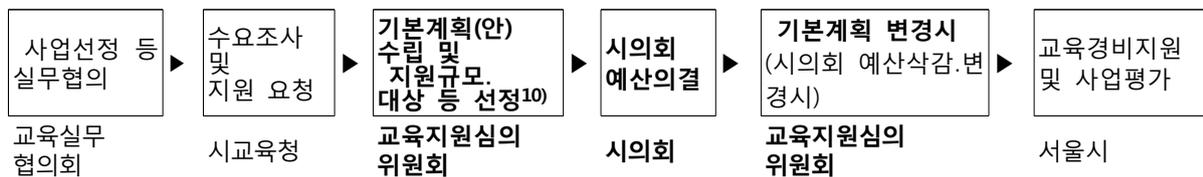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중 교육협력국 예산안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따른 비법정전출금이 404억 5천 8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는 비법정전입금(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이 41억 7천 7백만원만 편성되어 있음.
- 매년 교육위원회는 서울시의 비법정전출금 예산안과 교육청의 비법정전입금 예산안이 서로 상이한 것과 관련하여 회계간 전입·전출의 예산완전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예산확정 후에 서울시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시기별로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우선확정하게 되어 서울시의 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우선확정사업을 간주처리 한 후 결산이외에는 별도의 보고절차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온 바, 서울시와 교육청은 비법정전입금 사업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2014년부터 절차를 개선하였음.

#### < 기존 비법정전입금 사업선정 절차 >

-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교육지원 예산을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학교 및 사업비를 확정하여 교육청으로 전출함으로 인하여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할 수 없었음.

#### < 개선안 >

- 예산편성안을 제출하기 전에 교육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대상학교를 확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함.



-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지원사업비 집행  
: 대상학교, 대상사업, 지원규모 등

10) 비법정전입금 관련하여 3차례 교육실무협의회가 개최되었고(2014. 8. 12/9. 19/10. 21),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최종안이 2014. 10. 27 확정되어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반영되었음.

- 이러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이번 세입예산 안에 비법정전입금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울시와 교육청간에 소통의 부재 내지는 예산안 편성의 관행적 행태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예산의 계획성, 예측성에 비추어 세입재원이 누락된 심각한 오류가 있는 예산안 편성이라 할 것임.

#### □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문제

-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만 3~5세 아동에게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2012. 3. 1부터 만 5세 유아 대상 도입 시작)하여 유아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유아 학비·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임.
- 2012년 이전까지는 유치원의 유아교육비만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였지만, 2012년에는 유아교육비 외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만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추가되었고, 2013년부터는 만3세 및 만4세의 어린이집 유아까지 그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2012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음.
- 정부는 2012년 1월 누리과정을 만3세 및 만4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지원하던 만3세 및 만4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2013년 및 2014년에 연차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여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부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국회 예산확정 후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 2013년 2월 28일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음.

2012~ 2015년도 누리과정 연도별 자원부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어린아동 교육비 특별회계	만 3세	국비		국비	17,134	국비	30,814	교육비특별회계	155,493
		서울시		서울시	41,149	서울시	38,690		
				교육비특별회계	82,392	교육비특별회계	83,342		
	만 4세	국비		국비	13,004	교육비특별회계	110,956	교육비특별회계	110,984
		서울시		서울시	31,231				
				교육비특별회계	61,216				
	만 5세	교육비특별회계	76,952	교육비특별회계	98,804	교육비특별회계	100,704	교육비특별회계	99,207
	어린아동 교육비 부담 주체별	국비(복지부)		30,138		30,814			
		지방비(서울시)		72,380		38,690			
소계(국비+서울시)		-	102,518	69,504	-				
교육비특별회계		76,952	242,412	295,002	365,685				
국비+서울시+특별회계 합계		76,952	344,930	364,506	365,685				
유치원	교육비특별회계	83,179	214,936	252,333	251,178				
누리과정 (어린아동 +유치원) 합계	국비+서울시		102,518		69,504		-		
	교육비특별회계		160,131		547,335		616,863		
합계	160,131		559,866		616,839		616,863		

(2012-2013 집행현황, 2014, 2015 예산현황)

## 누리과정 지원 근거법령

구분	유치원 <유아교육법>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법률	<p>제24조(무상교육) ① <u>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p> <p>③ ~ ④ (생략)</p> <p>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p>제34조(무상보육)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② (생략)</p> <p>③ <u>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u></p> <p>④ <u>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u></p> <p>⑤ ~ ⑥ (생략)</p>
대통령령	<p style="text-align: center;">&lt;유아교육법 시행령&gt;</p> <p>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1. 유치원</p> <p>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p> <p>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영유아보육법 시행령&gt;</p> <p>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u>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u></p> <p>② <u>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u></p> <p>③ (생략)</p>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p>제1조(목적) <u>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u>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u></p>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	<p>6. 유아교육비</p> <p>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p> <p>1)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b>공통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은 만 3세 이상의 유아 수</b></p> <p>2)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p>	

- 그러나 보통교부금 등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원인 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관련하여 그 대상성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 「교육기본법」 제20조는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9조제1항에서 유아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하고 있으며, 그 지도·감독권은 「유아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24조가 규정하는 무상교육의 대상은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유치원의 유아교육으로 한정되고 교육청은 이에 따른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유치원 유아학비에 대한 지원만을 해야 함.
- 그런데 「유아교육법」의 목적과는 다르게 동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있는 바, 어린이집의 확보, 설치, 지도 및 감독에 대한 권한은 시·도교육감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어린이집에 대한 무상교육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는 「유아교육법」의 소관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동법 제24조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와 달리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무상교육을 받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교육·보육과정을 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누리과정이 교육과 보육의 통합과정이라는 점에서 어린이집을 “사실상의 교육기관”으로 간주하여야 하며<sup>11)</sup>,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는 시·도의

11) 「영유아보육법」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대상으로 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무상보육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에서도 누리과정 소요비용을 매년 보통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지원은 법령에 근거한 합법적인 지원이라고 함.

- 누리과정 지원 대상에 대한 이러한 논란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의 청구<sup>12)</sup> 및 행정입법(시행령)에 대한 규범통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sup>13)</sup>

**헌법재판소법**

**[시행 2011.4.5] [법률 제10546호, 2011.4.5, 일부개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2015년도 누리과정지원 보통교부금 내시액은 5,884억 9천 7백만원이 반영되었지만, 내년도 교육청의 실질 부담액은 6,168억 6천 3백만원으로 보통교부금의 내시액 보다 283억 6천 6백만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그러나 교육청은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 지원분인 914억 2천 1백만원만이 반영된 3,429억 2천 2백만원만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12) 「헌법재판소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교부결정이 심판대상이라 할 것임.
- 13)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015년도 누리과정 전체 소요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 월	'15년		
			인원	단가	금액
공 립 유 치 원	유아학비	1~2월	13,552	60	1,626
		3~12월	13,552	60	8,131
	방과후과정비	1~2월	6,792	50	679
		3~12월	6,792	50	3,396
	소 계			<b>40,688</b>	
사 립 유 치 원	유아학비	1~2월	78,101	220	34,364
		3~12월	78,101	220	171,822
	방과후과정비	1~2월	37,094	70	5,193
		3~12월	37,094	70	25,966
	소 계			<b>230,390</b>	
어 린 이 집	보육료	1~2월	105,082	220	46,236
		3~12월	105,082	220	231,180
	방과후과정비	1~2월	105,082	70	14,711
		3~12월	105,082	70	73,557
	소 계			<b>420,328</b>	
합 계					<b>616,861</b>

- 당초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등 어려운 지방교육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만 3~5세 누리과정 소요예산 3조 9,641억원 중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분 2조 1,545억원, 초등돌봄교실 사업비 5,995억원, 고교무상교육 2,422억원을 2015년 예산안에 신규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세출구조조정 및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범위 내에서 소요재원을 충당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전액 반영하지 않았음.

- 기획재정부의 예산반영 불가입장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조치이며, 특히 교육부가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초래하였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 2조 1,429억원<sup>14)</sup>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고, 서울시교육청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전액을 편성하지 않은 채 11월 1일 서울시의회에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음.
- 그러나 지난 11월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각 시·도 교육청마다 2~3개월분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편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교육청은 11월 7일 기제출안 예산안을 철회하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분(914억 2천 1백만원)이 반영된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였음. 이는 교육부가 교원명예퇴직 수당을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해줌에 따라 교육청도 자구노력을 통해 내년도 보육대란에 최소한도 선에서 대비하기 위한 예산안 편성으로 판단됨.
- 이렇게 편성된 내년도 누리과정지원(3,429억 2천 2백만원) 사업 조차도 전체 교육복지사업비의 약 38.2%에 해당하고 있어 2015년도부터 누리과정지원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지원하도록 한다면 향후 심각한 재정압박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 당초 정부는 2012년도에 누리과정 대상 확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총액의 20.27%’로 정해져 있는 만큼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자연증

14) 어린이집 이관분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산출한 금액(2조 1,545억원)과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산출한 금액(2조 1,429억원)간 차이는 유아통계 등 산출시점 등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보임.

가 할 것으로 낙관적인 예상을 하였음. 그러나 누리과정을 시작했던 초기의 예측과 달리<sup>15)</sup> 현재의 경제상황은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수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를 야기하여 교육청의 심각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음. 이러한 현상은 법령개정 등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2015년 이후에도 지속되어 교육청의 재정운영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교육청은 이에 대한 다방면의 대비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2015년도 교육사업비(1조 2,951억원) 대비 주요 교육복지사업비(6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본예산(안) (A)	2014년 본예산 (B)	비교증감 (A-B)	증감률	비 고
6 개 사업	누리과정	342,922	547,336	△204,414	△37.3%	○ 유치원 유아학비(12개월) - 유 치 원 91,653명 ○ 어린이집 보육료(3개월) - 어린이집 105,082명
	무 상 급 식	286,551	263,038	23,513	8.9%	○ 초등 조리종사원 인건비 (269억원) ○ 급식일수 조정 초등 192일 → 188일 중등 180일 → 175일
	저 소득 지원	132,355	134,440	△2,085	△1.6%	○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
	교 과 서 지원	62,382	54,243	8,139	15.0%	
	초 등 돌 봄 교 실	39,959	44,630	△4,671	△10.5%	○ 1, 2학년 ○ 인건비처우개선 27억원 운영비 증액 32억원 시설비 감액 △105억원
	교육복지특별지원	32,837	33,138	△301	△0.9%	
	소 계	897,006	1,076,825	△179,819	△16.7%	

○ 현재 교육사업비 중 주요 교육복지사업(6개)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9%에 이르고 있고, 본래 편성되어야 할 누리과정지원 예산은 전체

15)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약 3조원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교육복지사업의 절반에 이르고 있어 다른 교육사업을 비롯한 시설사업의 가용재원 부족현상을 야기할 것임은 물론 재원배분의 경직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누리과정과 같은 교육복지사업은 경직성 경비와 다름없어 사업의 축소·변경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점, 보통교부금은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총액으로 교부되는 재원임에도 누리과정 등의 국가시책사업과 맞물려 마치 목적사업비와 같이 의무지출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도 지방교육자치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음.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교부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건의하고 조속히 안정적인 교육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구 분	발의/제출	주 요 내 용
특별교부금 전체 규모 축소	정진후, 박홍근 유성엽, 김태년	- 특별교부금 규모를 현행 4%에서 2%로 축소
	김상희, 정부제출	- 특별교부금 규모를 현행 4%에서 3%로 축소
교부율 인상	박홍근	- 누리과정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교부금을 20.27%에서 22.0%로 상향 조정
	김상희	- 누리과정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내국세 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2.27%로 상향 조정
	김태년	- 3~5세 누리과정,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학교운영비지원, 교원 정원 확대,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등 교육재정 수요 반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교부금을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
특별교부금 사업비율 조정	유성엽	- 특별교부금 사업간 비율 조정 ※국가시책(60→40%), 지역현안(30→40%), 재해대책(10→20%)
	김태년	- 특별교부금 사업간 비율 조정 ※국가시책(60→40%), 지역현안(30% 동결), 재해대책(10→30%)
	김학용	- 특별교부금 사업간 비율 조정 ※국가시책(60 동결), 지역현안(30%→20%), 재해대책(10→20%)

구 분	발의/제출	주 요 내 용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	강은희, 김학용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에도 사용
	정진후	- 재해대책 집행잔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 사용
	박홍근	- 재해대책 집행잔액을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김태년	- 재해대책 집행잔액 교육재정 및 교육행정운용 우수교육청 인센티브 지급 근거 규정 삭제
국회 보고 등	유성엽	- 교부금의 배분기준 배분내역 배분금액 집행실적 등을 국회 상임위 보고
	강은희	-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 배분내역, 배분금액 및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집행실적을 국회 상임위 보고
	박홍근, 정부제출	-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 배분내역 등을 분기별로 국회 상임위 보고
	김태년 김학용	- 특별교부금 이외 우수교육청 선정기준 등은 삭제 - 우수교육청 지원재원을 국가시책 재원으로 전환

## □ 교육사업비의 불균형 심화

- 2015년도 교육사업비는 총 1조 2,950억 5천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397억 1천 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교육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약 77.2%에 이르고 있고 이 중 교육복지사업은 누리과정 미반영분을 제외하더라도 무려 약 72%에 달하고 있음. 더욱이 교육복지사업 증가율은 교육사업비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교육복지사업의 비중 증가현상은 점차 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교육복지사업 비중의 지속적 증가요인은 누리과정지원, 무상급식지원 및 초등돌봄교실운영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예산안에서 6개 주요 교육복지사업비는 누리과정 미반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사업 전체의 96%에 해당하고 있어 사업간 예산편중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
- 교육복지사업은 대부분 시작되면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자칫 사업의 축소나 폐지로 인하여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고정적 지출의 경상적 경비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인 바,

- 교육사업비 중 복지사업비를 제외한 교육사업비의 축소, 특히 재원부족에 따른 세출예산절감을 위해 사업의 목적, 필요성,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분석 없이 사업을 축소·폐지한 것은 교육의 핵심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이번 예산안에서 기초학력향상 지원(△54%),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61%), 장애학생교육활동지원(△42%), 대안교육위탁기관운영(△42%), 교원연수지원(초등 △40%, 중등 △43%) 등의 사업을 전년과 대비하여 과도하게 감액한 것은 장기적으로 학교현장의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교육력 제고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재정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경직성 경비 및 국가시책 사업 등의 의무적 지출이 세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재원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사업에 편중된 예산 편성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따라서 다양한 교육 수요변화에 따른 교육재정의 탄력적 운영과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업의 추진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체재원에 따른 한계가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재원분담에 대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2011년~2015년 교육복지사업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년 본예산	2012년 본예산	2013년 본예산	2014년 본예산	2015년 본예산(안)
교육사업비		899,303	1,159,883	1,174,157	1,543,645	1,295,057
총 계		482,979	690,911	782,124	1,130,666	932,981
		53.7%	59.6%	66.6%	73.2%	72.0
학비지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74,351	79,810	58,259	55,510	61,906
	특성화고장학금지원	42,584	43,784	35,404	35,049	25,116
	기타교육비지원 (장애유아학비)	1,827	1,337	1,337	1,395	1,286
	소 계	118,762	124,931	95,000	92,428	88,308
방과후등 교육지원	방과후학교운영	155	5,390	14,017	12,423	9,573
	주5일제수업지원	0	0	98	0	0
	초등돌봄교실운영 (전담강사인건비 포함)	29,624	44,820	35,149	44,630	39,959
	저소득층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16,268	27,691	34,372	34,401	25,541
	소 계	36,365	63,519	68,842	92,954	75,073
급식지원	학기중급식비지원	39,516	46,833	42,746	34,429	32,807
	토공휴일중식지원	6,021	6,881	6,848	5,800	5,346
	소 계	45,537	53,714	49,594	40,229	38,153
정 보 화 지 원	정보화지원	8,454	8,459	7,775	7,300	6,755
교육복지 우선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43,529	43,533	36,033	33,138	32,837
누리과정 지 원	누리과정지원	73,259	206,707	231,999	547,336	342,922
교 과 서 지 원	교과서지원	40,841	51,998	65,009	54,243	62,382
무상급식 지 원	무상급식 지원	116,232	138,050	227,872	263,038	286,551

## □ 시설사업비 재원 부족

- 금번 시설사업비는 교육사업비 대비 29.4%에 불과한 3,813억 5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학교신설비가 전년대비 1,064억 7천 4백만원 증액되는 등 전년대비 1,139억 4천 3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시설사업비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시설투자를 지양하고 교육현장의 실사를 통한 실질수요를 반영함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의무지출성 교육사업비의 증가로 인한 교육사업 편중 경향과 그에 따른 시설사업 재원의 부족 등도 시설사업비 축소의 주요요인이라 하겠음.
- 더욱이 금번 시설사업의 재원은 전액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보통교부금 산정의 시설사업 측정항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차입을 통한 사업 수행을 유도하고 있음. 결국 자체재원 증가에 따른 시설사업비의 증가가 아닌 채무를 통한 시설사업의 증가인 만큼 시설사업비에 대한 재원확보 문제는 매년 심각한 상황이라 하겠음.
- 교육사업과 시설사업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원투입의 규모, 중요성,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바, 현재와 같이 특정 영역의 재원 편중이 심화된다면 가용재원의 부족현상으로 말미암아 교육현장의 만족도를 적기에 제고할 수 없게 되므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설사업 지원의 확대를 꾀하여야 할 것이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더욱 개선·발전시켜 불요불급한 재원낭비를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주요사업별 검토

### □ 시민감사관 운영

(단위: 천원)

세부사업	사업항목	2015년도 본예산	2014년도 본예산	증감
감사관리	시민감사관 운영	73,502	25,750	47,752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24,455	43,700	△19,245

- 교육청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여 많은 비판을 받아왔음. 이에 대한 조치로 교육청은 지난 8월 13일 ‘청렴도 향상 대책’을 발표하였음. 동 대책에는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의 방안으로 시민감사관을 확대하는 동시에 시민감사관을 감사담당자로 참여하게 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근’ 시민감사관을 운영할 계획인바, 금번 예산안에는 이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 편성된 것이라 하겠음.
- 감사관리 예산 2억 3천 8백만원 중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예산이 2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천 9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조직개편 시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업무는 기존의 감사관에서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이관될 예정인 바,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관련 예산이 감사관에 편성된 것은 이해되나, 현재 교육감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안전관리단의 경우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는 등 금번 예산안의 경우 2015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을 대부분 고려하지 아니하고 편성됨으로써 내년에 대량의 예산이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교육공동체 운영

(단위: 천원)

세부사업	사업항목	2015년도 본예산	2014년도 본예산	증감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공동체 운영	503,400	23,600	479,800

- 교육공동체 운영은 전년대비 4억 7천 9백만원이 증액된 5억 3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초·중등 일반학교 혁신프로그램을 공모한 후 학교회계로 진출할 예산임. 다만,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한 원활한 사업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체육대회지원

(단위: 천원)

세부사업	사업항목	2015년도 본예산	2014년도 본예산	증감
체육대회지원	교육장배 대회	86,476	118,800	△32,324

- 체육대회지원 전체예산은 26억 5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3천 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체육대회지원 사업은 학생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건강체력·정서순환·학습력 신장과 각종 경기대회 참여를 통한 스포츠정신의 고취 및 기초체력 육성을 목표로, 교육감과 교육장이 주관하는 서울특별시 학생 체육대회, 체육관련 협회나 중앙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국학생 체육대회 그 밖에 국제경기대회 등 크게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음.

- 이러한 체육대회지원 관련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동 조례에 따른 체육대회 종목과 현

재 시행하고자 하는 종목 간에 다소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바, 예를 들어 동 조례에 따른 교육장 주관(교육장배) 체육대회는 수영, 육상, 체조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2015년도 예산안에는 수영, 육상 이외에 건강달리기가 포함되어 있음.

- 특히 체육대회 참가 우수선수에 대하여 표창을 할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의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체육대회의 경우 표창의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임.
- 따라서 학생체력증진의 도모와 학생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그 근거를 명확히 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단위: 천원)

세부사업	사업항목	2015년도 본예산	2014년도 본예산	증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경상교육지원사업비	2,000,000	800,000	1,200,000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1,000,000	400,000	600,00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000,000	500,000	500,000
	학교특별교육지원비	1,000,000	800,000	200,000
	계	5,000,000	2,500,000	2,500,000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은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금번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25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이 편성되었음.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예비비와 성격이 중복되고, 경상비나 시설비 집행에 집중되어 있는 등 집행의 비효율성이 매년 지적되었음. 따라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예산편성을 최소화하여 편성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교육수요에 투입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함.
- 다만, 현재의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을 감안한다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전년대비 100% 증액편성한 것은 다소 과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됨.

□ 정보화지원

(단위: 천원)

세부사업	사업항목	2015년도 본예산	2014년도 본예산	증감
정보화지원	컴퓨터지원	1,109,564	1,653,987	△544,423
	인터넷통신비지원	5,645,553	5,645,868	△315
	계	6,755,117	7,299,855	△544,738

- 정보화지원은 「교육기본법」 제23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접근 환경 개선을 개선함은 물론 사이버가정학습, EBS 수능강의 등 이러닝 시스템의 활용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2011년~2014년 정보화지원 인원 및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지원내역	지원인원	예산액
2011	PC	2,031	2,213,918
	인터넷통신비	28,716	6,240,494
2012	PC	1,395	1,562,400
	인터넷통신비	28,198	6,896,264
2013	PC	1,437	1,609,440
	인터넷통신비	29,510	6,165,856
2014	PC	964	1,653,987
	인터넷통신비	27,084	5,645,868

- 다만, 동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의 망차단 방식에서는 저소득층자녀들의 게임·인터넷 중독의 우려가 있으며, 유해차단 서비스의 부실 도입으로 사후관리가 부실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따라서 원격으로 유해정보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정보화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 특색교육과정운영

(단위: 천원)

세부사업	사업항목	2015년도 본예산	2014년도 본예산	증감
특색교육과정운영	일반고 교육력제고 지원	9,250,000	1,840,000	7,410,000
	인생학교 신규운영	359,330		
	서울형 중점학교 운영지원	3,000,000		
	자율학교등 지정·운영·평가	46,170	67,950	△21,780
	기타사업		30,200	△30,200
	<b>계</b>	<b>12,655,500</b>	<b>1,938,150</b>	<b>10,717,350</b>

- 특색교육과정운영은 전년대비 107억 1천 7백만원이 증액된 126억 5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일반고 교육력제고 지원은 학교(일반고 185개교) 당 지원금을 상향조정(1천만원 ▶ 5천만원)하여 전년대비 74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현재 서울시 전체 고교 319교 중 자율고(44교), 특목고(19교), 특성화고(70교)를 제외한 일반고는 185개교(58.0%)로 일반고가 전체 고교의 대다수(학생수 기준 67.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선발권·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목고나 자율고(자율형 공립고·자율형사립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으며, 학교별 입학 학생들의 성적 분포 격차가 심화되어 학교간 서열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일반고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총계	일반고		소계	자율고		소계	특수목적고						소계	특성화고		소계
	일반1	일반2 (종합고)		사립	공립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		직업	대안	
319	184	1	185	25	19	44	3	6	1	6	1	3	20	70	.	70

- 교육부도 지난해 10월 28일, 일반고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화 확대, 행·재정지원 강화, 일반고 학생의 진로직업교육 확대와 자사고에 대한 학생선발 방법의 제도개선 및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음.
- 현재 일반고 학생들 간의 학업성적 격차 및 진로 희망의 다양화로 인해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 진로직업교육 희망 학생, 학업부진 학생 등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일반고가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단순 예산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서울형 중점학교 운영지원은 30억원 편성되었는 바, 동 사업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에 대하여 서울형 중점학교 및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란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에 있어 학교가 광범위한 자율성을 갖되, 그 책무성은 학생·학부모의 선택에

의하여 담보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학교 모형으로 2010년에 도입되었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되,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 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 전국 자사고는 49개교(전체고교의 3.5%)이며 이중 서울이 25개교(서울고교의 7.9%)로 우리나라 자사고의 절반이 서울에 존재함.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5년마다 자사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학교는 지정 취소 가능함. 교육청은 지난 6월 교육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한 '자사고 학교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했으나, 교육감 직권 지정 취소 대상인 입시 부정, 회계 부정, 교과과정 부당 운용 등 감사에서 지적받은 학교들조차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의 평가만으로는 재지정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공교육영향평가에 이어 운영성과 종합평가를 지난 8월에 진행하였음.
- 교육청은 평가결과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경희·배재·세화·우신·이대부속·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 취소하고 신일·송문고는 지정 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나, 교육부가 교육청의 6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직권취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 상황임.<sup>16)</sup>
- 서울형 중점학교 운영 지원 예산안 편성은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 계획'에 따라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해당 학교가 희망하면 학교당 2~4억원의 운영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반영된 것이지만, 현재 자사고 25개교 중 자진해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학교는 단 한 학교도 없는 상황이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정취소한 자사고도 교육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직권 취소로 말미암아 자사고의

16) 교육부는 지난 11월 21일,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없으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음.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동 사업은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라 하겠음. 따라서 동 사업 예산은 교육청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다른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초등돌봄교실운영

(단위: 천원)

세부사업	사업항목	2015년도 본예산	2014년도 본예산	증감
방과후학교운영	초등돌봄교실운영	39,959,228	44,630,095	△4,670,867

- 초등돌봄교실운영은 전년대비 46억 7천만원이 감액된 399억 5천 9백만 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시설 확충비를 제외하고 인건비 등 최소한의 운영비만 책정한 금액이라 하겠음.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16일 핵심국정과제인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희망자 전원에게, 2016년까지 초등생 전원에게 방과후 무상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음.
-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서비스는 2014년에는 2학년까 지, 2015년 4학년까지, 2016년 6학년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오후 돌봄은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하되,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중에서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오후 10시까지 저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계획하였음.
- 당초 교육부는 2015년도 초등돌봄교실 예산으로 인건비 1,991억원, 프 로그램비 1,032억원, 시설비 609억원, 기타 2,968억원 등 총 6,600억원 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관 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상태임. 현재의 교육청 예산상황은 초 등돌봄 전용교실을 증축하기에도 예산이 부족하여 돌봄전담사 월급을

제대로 주기 힘들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실정임. 교육부의 방침대로 2015년도 무상 초등돌봄교실이 3, 4학년까지 확대되지 못한다면, 향후 계획도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등돌봄교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세계시민교육(신규사업)

(단위: 천원)

세부사업	사업항목	2015년도 본예산	2014년도 본예산	증감
학생생활지도지원	세계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	174,200	0	순증
	세계민주시민교육 환경 조성	343,100	0	순증
	계	517,300	0	517,300

- 세계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5억 1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교육청은 “서울교육 방향” 과 해설에서 공존과 상생의 ‘세계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있음. 다만, 세계민주시민교육 환경조성 사업 중 세계시민형 혁신학교 운영 3억 1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서울형 혁신학교 이외의 혁신학교를 별도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서울형 혁신학교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이며, 다른 것이라면 굳이 혁신학교라는 이름을 써야 하는 것인지 등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구체적 사업 비전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무상급식

(단위: 천원)

세부사업	사업항목	2015년도 본예산	2014년도 본예산	증감
학교급식운영	무상급식	286,551,405	263,037,739	23,513,666

- 무상급식은 전년대비 235억 1천 3백만원이 증액된 2,865억 5천 1백만원이 편성됨.

**2011~2015 무상급식 예산 변동 추이, 분담율,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소요액(억원)	1,816(100%)	3,239(100%)	4,355(100%)	5,261(100%)	5,140(100%)	
분담	교육청	1,335(74%)	1,775(55%)	2,441(56%)	2,899(55%)	2,866(55%)
	서울시	167(9%)	917(28%)	1,148(26%)	1,417(27%)	1,364(27%)
	자치구	314(17%)	547(17%)	766(18%)	945(18%)	910(18%)

- 다만, 2015년에도 여전히 공립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분담분(592억)에 대하여 교육청과 서울시가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는 서울시가 2011년 무상급식 도입 당시 학부모부담경비에 한하여 부담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입장차이만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안정적인 급식재원의 확보 차원에서라도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 시설사업비 총 규모가 전년대비 1,139억 4천 3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지만, 동 재원은 전액 지방교육채에 의한 것으로 여전히 시설사업비 재원은 매년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 하겠음.
- 현재의 열악한 재원구조 속에서도 노후교실 개축 및 노후교실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전년대비 155억 1천 5백만원이 증가한 1,257억 8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육환경개선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시설사업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업간 조정 및 세입재원 증대 방안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

**노후교실 개축 : 16,154백만원(3교, 병설유치원 포함)**

(단위: 백만원)

청별	설립별	학교급	학 교 명	2015년본예산(안)				계
				내 부 비품비	건 설 비		계	
					설계비	시설비		
강동송파	공립	초	거 여 초 (병설유)	304		12,100	12,100	<b>12,404</b>
동작	공립	초	은 로 초			700	700	<b>700</b>
동작	공립	고	서울공고			3,050	3,050	<b>3,050</b>
<b>계</b>				304	0	15,850	15,850	<b>16,154</b>

**노후시설 개선 : 109,630백만원(533건)**

(단위: 백만원)

번호	단위사업별	2015년 본예산(안)	학교수							
			계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기타
1	전기시설개선	8,306	23		7	4	12			
2	냉난방개선	17,805	70	1	20	17	30	1	1	
3	창호개선	12,656	44	1	19	8	16			
4	외벽개선	8,248	16		9	5	2			
5	소방시설개선	3,465	35		20	11	4			
6	방수공사	12,820	138		57	44	36	1		
7	바닥개선	8,056	42		26	8	8			
8	도장공사	1,234	26		15	5	6			
9	외부환경개선	3,292	42		25	9	8			
10	기타사업	30,733	81	3	22	19	22	1		14
11	장애인편의시설	3,015	16		8	7	1			
<b>계</b>		109,630	533	5	228	137	145	3	1	14

## □ 성인지 예산

- 여성정책추진사업 9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개 및 교육부 지정사업 10개 등 총 24개 사업 1,320억 1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금번 세출예산 총 규모의 1.7%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107억 1천 6백만원 감액 편성된 것임. 이는 교육청의 재정악화에 따라 성인지 예산안의 대부분의 사업 역시 감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 사료됨.
- 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sup>17)</sup>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 3년이 되고 있음에도 자체사업은 전무한 실정이고 교육부 지정사업 등 중앙정부 대상사업이 대부분이어서 향후 자체추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분명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성별수혜분석기법의 개발 및 성별통계와 분석기법 등을 완비하도록 하여야 노력하여야 할 것임.

##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생략)

##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 8. 심사결과 : 수정 가결(붙임)

17) 성인지 예산제도는 호주를 효시로(1984년 “women’s budget” 수립)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 인도, 필리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영국, 프랑스,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 지역, 미국, 멕시코, 페루 등을 포함한 아메리카 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동안 국가 차원에서만 실시되던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이 개정(2011. 3. 8 일부개정)되면서 2013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확대되었음.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의결내역

<붙임>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교육위원회 심사의결내역  
(2014. 12. 05)

□ 총규모

(단위 : 천원)

구분	본예산안	교육위 심사의결내역	증감금액
세입	7,690,091,797	7,690,091,797	0
세출	7,690,091,797	7,690,091,797	0

□ 세입증액내역

(단위 : 천원)

항명	본예산안	심사의결액	증액금액	비고
순세계잉여금	-	0	-	
합계	-	-	-	

□ 세출감액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본예산안	심사의결액	감액금액	비고
교육정책홍보	1,310,637	1,234,637	△7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기획및콘텐츠개발(월간서울교육)</li> <li>○ 뉴미디어정책홍보(sns및모바일매체개발)</li> <li>○ 서울교육영상홍보물제작(교육감핵심공약정책홍보영상제작)</li> </ul>
감사관리	237,903	236,703	△1,200	학교지원중심의감사운영개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노트북 10%감액)
교육행정기록물관리	2,590,137	2,504,907	△85,230	기록물관리(기록물공개재분류비)
본청운영	4,736,680	4,733,208	△3,472	본청부서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보담당관 일반수용비 교육법전구입비 256천원 전액감액</li> <li>○ 총무과 일반수용비 복사용지구입 30,000*50상자*2회=3,000천원 감액</li> <li>○ 초등교육과 일반수용비 신문구독료 216천원 전액감액</li> </ul>
교육지원청운영	7,300,631	7,299,961	△670	지역교육청기본운영비-각종비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부:연수용빔프로젝트(강당) 550천원 감액</li> <li>○ 남부:(행지)사무용기기(프린터외) 120천원 감액</li> </ul>

직 속 기 관 운 영	23,897,853	23,893,119	△4,734	<p>평생교육기관기본운영비 정보화기기 관련 예산 10% 감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동도서관 : 디지털자료실(컴퓨터,모니터,프린터) 244천원</li> <li>○ 강서도서관 : 디지털자료실운영(검색컴퓨터) 130천원</li> <li>○ 동대문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자료실운영 업무용PC 220천원,</li> <li>- 문화기획팀운영 복합기 250천원</li> </ul> </li> <li>○ 서대문도서관 : 각종비품관리(컴퓨터및모니터) 240천원</li> <li>○ 양천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지원과운영 컴퓨터 350천원</li> <li>- 문화활동지원과운영 컴퓨터,모니터 728천원</li> <li>- 학교도서관지원과운영 노트북 110천원</li> </ul> </li> <li>○ 용산도서관 : 디지털자료실운영(PC,복사기) 460천원</li> <li>○ 정독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자료과(프린터및카메라구입) 200천원</li> <li>- 문화활동지원과(PC,모니터,프린터) 650천원</li> </ul> </li> <li>○ 종로도서관 정보자료과(PC,모니터) 552천원</li> <li>○ 마포평생학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학습과운영 노트북 180천원</li> <li>- 행정지원과운영 프린터 50천원</li> </ul> </li> <li>○ 고척도서관 : 복합기(디지털실이용자용) 100천원</li> <li>○ 남산도서관 : 행정지원과운영(컬러프린터) 270천원</li> </ul>
학교운영비지원	592,603,200	587,712,390	△4,890,810	학교기본운영비 -> 학교직원처우개선비로 이관
특별교육재정수요	5,000,000	4,250,000	△750,00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25,541,010	24,541,010	△1,000,000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운영
정보화지원	6,755,117	6,655,825	△99,292	컴퓨터지원(교육복지담당관 PC예산 10%감액)
정보보안관리	6,306,098	6,208,143	△97,9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운영(정보보안시스템 노후장비 교체)</li> <li>○ 정보화관리(행정정보화사무기기보급/PC및프린터보급)</li> </ul> (정보화담당관 PC예산 10%감액)
교육과정운영	742,985	527,185	△215,800	역사교육활성화지원
독서논술교육활성	572,856	546,256	△26,600	독서토론논술활성화지원(독서문화확산지원)
특색교육과정운영	12,655,500	10,655,500	△2,000,000	서울형중점학교 운영(3개교만 운영)
방과후학교운영	49,533,138	49,514,238	△18,900	<p>방과후학교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지원청-구청-지역시민단체)거버넌스구축 및 운영</li> </ul>
교과교실제운영	5,299,840	5,193,640	△106,200	교과교실제 운영비지원(12~14년도입학교) -177교, @21,500천원->@20,900천원
ICT활용교육지원	343,370	142,050	△201,320	SW교육지원-초중고SW시범학교운영
스마트교육지원	1,369,036	869,036	△500,000	서울미래학교설립(교수학습용시스템운영비)
영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41,236,731	35,236,731	△6,000,000	영어원어민 인건비 및 제경비 영어회화전문강사
학교평가관리	406,838	256,838	△150,000	<p>학교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수당 감액</li> </ul>

도서관운영지원	5,327,207	5,301,262	△25,945	도서관정보화사업지원 (디지털자료실 노후 PC교체)
학생생활지도지원	1,595,838	1,445,838	△150,000	세계민주시민교육환경조성(세계시민형혁신학교운영)
마이스터고운영지	2,170,000	2,040,000	△130,000	마이스터고지원 지원교 삭감
학교급식관리	428,740	291,590	△137,150	식생활교육 감액사업 ○ 식생활교육시범(거점)학교운영 : 20,950천원 ○ 학교급식 우수실천사례 연구대회 : 19,700천원 ○ 교육자료 개발 : 40,500천원 ○ 영양(교)사 컨설팅 운영 : 9,300천원 ○ 학교급식만족도 조사도구 개발 : 22,600천원 ○ 홍보자료 개발보급 : 24,100천원
학교급식운영	287,148,567	286,980,867	△167,700	식재료안전성검사
학교급식환경개선	22,308,998	19,051,279	△3,257,719	학교급식환경개선 구의중 외 4개교
시설사업관리	20,310,762	19,238,562	△1,072,200	학교시설민간위탁운영 교육환경개선사업 시민참여현장 검증단운영
학교시설교육환경개	125,784,376	121,446,745	△4,337,631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외 7건
교원연수운영	2,288,783	2,287,529	△1,254	연수기획평가및원격연수 (교육연수원 빔프로젝트 삭감)
예비비	7,903,210	7,713,732	△189,478	예비비
<b>합계</b>	<b>1,263,706,041</b>	<b>1,238,008,781</b>	<b>△25,697,260</b>	

□ 세출증액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본예산안	심사·의결액	증액금액	비 고
학교운영비지원	592,603,200	606,093,806	13,490,606	학교직원처우개선 4,890,810천원 (명절휴가비 3,496,200천원 맞춤형복지비 874,050천원 영양사 직무관리수당 392,400천원 초등 사서실무사 자격수당 128,160천원) 비정규직 급식비 8,400,000천원 전임코치 149,796천원 강북중 교육정보화사업 50,000천원
의정활동지원	37,540	70,500	32,960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교육복지우선지원	43,960,450	45,736,450	1,776,000	지역교육복지네트워크(센터) 276,000천원 혁신교육지구(2개지구 추가) 1,500,000천원
교육과정운영	742,985	1,118,349	375,364	역사교육활성화(친일인명사전175,500천원) 독도사랑교육활성화 199,864천원
학력향상지원	3,745,870	3,845,870	100,000	초등학교 기초학습 학력신장
학교평가관리	406,838	513,038	106,200	학교평가실시(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수당) 106,200천원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 등자녀교육지원	2,265,513	2,295,513	30,000	영일초 다문화사업 연구용역비
특수교육복지지원	12,520,440	12,720,440	200,000	특수교육관련서비스(장애인 촉각자료)
학교폭력예방지원	11,701,299	11,801,299	100,000	학교폭력 스마트신고 및 상담시스템 구축
학생생활지도지원	1,595,838	1,795,838	200,000	광복70주년 나라꽃무궁화 한마당(현충원) 100,000천원 제한몽골학교운영비 지원 100,000천원
체육육성증목지원	165,500	386,280	220,780	체육육성증목지원
학교급식환경개선	22,308,998	24,228,520	1,919,522	보일러 등 긴급 노후시설 개보수 외 14건
학교체육활성화지원	15,809,033	17,209,033	1,400,000	초등스포츠강사
공유재산및물품관리	1,921,521	1,991,521	70,000	학교협동조합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125,784,376	131,220,204	5,435,828	취경여중 학교소운동장 설치비 외 100건
학교시설증개축	17,285,567	17,525,567	240,000	신구로초 급식실 및 강당 설계용역 외 7건
<b>합 계</b>	<b>852,854,968</b>	<b>878,552,228</b>	<b>25,697,260</b>	